

중화인민공화국 공증 관계 법령

-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 -

2005년 8월 28일 제10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로 통과
2005년 8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39호로 공포; 2006년 3월 1일 시행

제1장 총칙

[제1조] 공증업무를 규율하고 공증기구 및 공증원이 법에 의하여 직무를 이행하도록 보장하고, 분쟁을 예방하며, 자연인, 법인 및 기타 단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공증은 공증기구가 자연인, 법인 및 기타 단체의 촉탁에 의하여 법정 절차에 따라 민사법률행위, 법적의의가 있는 사실 및 문서의 진실성, 합법성에 관하여 증명하는 행위이다.

[제3조] 공증기구는 법률을 준수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의 원칙을 지켜 공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 전국에서 중국공증협회를 설립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지방공증협회를 설립한다. 중국공증협회와 지방공증협회는 사회단체법인이다. 중국공증협회 정관은 회원대표대회에서 제정하고 국무원사법행정부에 보고한다.

공증협회는 공증업의 자율적단체이고 정관

에 기하여 활동하며 공증기구, 공증원의 업무처리를 감독한다.

[제5조] 사법행정부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증기구, 공증원 및 공증협회를 감독, 지도한다.

제2장 공증기구

[제6조] 공증기구는 법에 의하여 설립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며 법에 의하여 독립하여 공증직능을 수행하고 민사책임의 증명역할을 하는 기구이다.

[제7조] 공증기구는 전체적인 기획, 합리적 분배의 원칙에 따라 현, 구를 설립하지 않는 시, 구를 설립한 시, 직할시 및 시할구에 서 설립된다. 구를 설립한 시, 직할시는 하나 또는 수개의 공증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공증기구의 설립은 행정구획의 기준에 따르지 않는다.

[제8조] 공증기구의 설립은 다음 각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자신의 명칭을 가질 것

- (2) 고정된 장소를 가질 것
- (3) 2명 이상의 공증원이 있을 것
- (4) 공증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할 것

[제9조] 공증기구의 설립은 소재지의 사법행정부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사법행정부에 보고하여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공증업무수행허가증을 부여함으로 한다.

[제10조] 공증기구의 책임자는 3년 이상의 직무경력을 가진 공증원중에서 선발되며 소재지 사법행정부에서 승인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사법행정부에 통보한다.

[제11조] 자연인, 법인 기타 단체의 촉탁에 의하여 공증기구는 다음 각호의 공증사항을 처리한다.

- (1) 계약
 - (2) 상속
 - (3) 위임, 성명(聲明), 증여, 유언
 - (4) 재산분할
 - (5) 입찰, 경매
 - (6) 혼인상황, 친척관계, 입양관계
 - (7) 출생, 생존, 사망, 신분, 경력, 학력, 직무, 직위, 전과 여부
 - (8) 회사정관
 - (9) 증거보전
 - (10) 문서상의 서명, 날인, 일자, 문서의 부분, 사본과 원본의 일치 여부
 - (11) 자연인, 법인 기타 단체가 스스로 촉탁하는 기타 공증사항
- 법률, 행정법규가 공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자연인, 법인 기타

단체는 공증기구에 촉탁하여 공증하여야 한다.

[제12조] 자연인, 법인 기타 단체의 촉탁에 의하여 공증기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 (1) 법률, 행정법규에 의하여 공증기구가 처리할 것으로 규정한 업무
- (2) 보관(提存)
- (3) 유언장, 유산 또는 기타공증사항과 관련된 재산, 물품, 문서의 보관
- (4) 공증사항과 관련된 법률사무문서의 대서
- (5) 공증법률에 관한 자문

[제13조] 공증기구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1) 진실이 아니거나 비합법적인 사항에 대하여 공증서를 발급하는 것
- (2) 공증문서나 공증기록을 훼손, 변개하는 것
- (3) 다른 공증기구, 공증원을 비난하거나 리베이트, 배당을 비롯하여 부당한 수단으로 공증업무를 훼손하는 것
- (4) 업무상 지득한 국가기밀, 상업기밀 또는 개인 기밀을 누설하는 것
- (5) 비용규정을 위반하여 공증비를 징수하는 것
- (6) 법률, 법규, 국무원 사법행정부의 규정이 금지한 기타 행위를 하는 것

[제14조] 공증기구는 업무, 재무, 자산 등 관리제도를 제정하여야 하며 공증원의 업무처리를 감독하고 직무상 과실책임을 추궁하는 제도를 제정하여야 한다.

[제15조] 공증기구는 공증업무책임보험에 가

입하여야 한다.

제3장 공증원

[제16조] 공증원은 이 법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공증기구에서 공증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17조] 공증원의 인원수는 공증업무의 수요에 의하여 결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사법행정부는 공증기구의 설립상황 및 공증업무의 수요에 따라 공증원의 인원수 배분안을 정하며 국무원사법행정부에 보고한다.

[제18조] 공증원으로 임명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1)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을 가질 것
- (2) 연령이 25세 이상 65세 미만일 것
- (3) 품행이 양호하고 법 및 규범을 준수할 것
- (4) 국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5) 공증기구에서 2년 이상 실습하거나 3년 이상의 기타 법률직업경력 및 공증기구에서 1년 이상 실습하고 시험에 합격할 것

[제19조] 법학교육, 연구업무 종사자, 고급직 위자 또는 학사 이상 학력을 가진 자, 심판, 검사, 법제업무, 법률업무 경력 10년 이상의 공무원, 변호사로 원래의 근무처에서 이직하고 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증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제20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면 공증원이 될 수 없다.

- (1) 민사행위능력이 없거나 제한된 자
- (2) 고의로 범죄를 범한자나 직무상 과실

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3) 공직에서 면직된 자

(4) 업무허가가 취소된 자

[제21조] 공증원으로 임명되기 위하여는 공증원 임명조건을 구비한 자만 신청할 수 있다. 공증기구의 추천을 받아 소재지 사법행정부에서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사법행정부에 통보하고 심사 후 동의를 받아 국무원사법행정부에 임명을 신청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사법행정부가 공증원 업무허가증을 수여한다.

[제22조] 공증원은 규범과 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업윤리를 지키고 법률에 따라 공증업무를 수행하고 직무상 비밀을 유지한다. 공증원은 업무에 따른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고 보험과 복리혜택을 누리며 사직, 소 및 상소의 권리를 가진다. 법정사유 및 법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직되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

[제23조] 공증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1) 동시에 2개 이상의 공증기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
- (2) 보수를 받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것
- (3) 본인 및 친척을 위한 공증 또는 본인 및 친척에 이해관계가 있는 공증을 하는 것
- (4) 임의로 공증서를 발급하는 것
- (5) 진실에 반하거나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공증하는 것
- (6) 공증비용을 횡령하거나 공증전용물품의 점유를 침해하거나 절취하는 것
- (7) 공증문서나 기록을 훼손하거나 변개하는 것

(8) 직무상 지득한 국가기밀, 상업기밀, 개인기밀을 누설하는 것

(9) 법률, 법규, 국무원사법행정부의 규정이 금지하는 기타 행위

[제24조] 공증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면 소재지 사법행정부는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사법행정부에 통보하고 국무원사법행정부에 면직을 신청할 수 있다.

- (1)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
- (2) 연령이 65세 이상이거나 건강을 원인으로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는 자
- (3) 자발적으로 공증원의 직무를 사임한 자
- (4) 공증업무허가를 취소당한 자

제4장 공증절차

[제25조] 자연인, 법인 기타 단체는 주소지, 거소지, 행위지 또는 사실발생지의 공증구에 공증을 촉탁할 수 있다.

부동산에 관련된 공증의 신청은 부동산소재지의 공증구에 신청하여야 한다. 부동산에 관한 위탁, 성명(聲明), 증여, 유언의 공증시에도 전단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제26조] 자연인, 법인 기타 단체는 대리인에 의하여 공증할 수 있다. 단 유언, 생존, 입양 관계 등은 본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27조] 공증을 촉탁하는 당사자는 공증구에 대하여 공증사항과 관련된 정황을 설명하고 진실하고 합법적이고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증빙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공증구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공증구는 공증신청을 수리한 후 당사자에게 신청된 공증사항의 법적 의의 및 발생 가능한 법률효과를 고지하고 고지내용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28조] 공증기구가 공증함에 있어 공증사항별로 공증규칙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 (1) 당사자의 신분, 공증신청자격 및 해당 권리
- (2) 제출된 문서의 내용의 완비 여부, 내용의 명확성, 서명, 날인의 완비 여부
- (3) 제출된 증빙자료가 진실하고 합법적이고 충분한지 여부
- (4) 신청한 공증사항이 진실하고 합법적인지 여부

[제29조] 공증기구는 신청된 공증사항 및 당사자가 제출하는 증빙자료에 대하여 관련된 공증규칙에 따라 확인을 요하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확인하거나 다른 공증기구에게 위탁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단체나 개인은 법에 따라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0조] 공증기구는 심사후 제출된 증빙자료가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충분하고 또 신청한 공증사항이 진실하고 합법적이라고 판단하면 신청을 수리한 후 15 업무일 내에 당사자에게 공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불가항력이나 보충 증빙자료나 관련정황의 확인의 필요가 있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1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면 공증구는 공증할 수 없다.

- (1) 민사행위능력이 없거나 제한된자가 후견인에 의하여 대리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2) 당사자와 신청 공증사항이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 (3) 신청 공증사항이 전문기술감정이나 평가사항에 속한 경우
- (4) 당사자간에 신청 공증사항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
- (5) 당사자가 허구나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6) 당사자가 제공하는 증빙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증빙자료의 보정을 거절하는 경우
- (7) 신청 공증사항이 진실이 아니거나 위법한 경우
- (8) 신청공증사항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 (9) 당사자가 규정에 따른 공증비용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제32조] 공증서는 국무원사법행정부가 규정한 양식에 따라 제작되고 공증원의 서명이나 공증원의 날인과 공증기구의 날인을 하여야 한다. 공증서는 교부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공증서는 전국통용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소수민족자치구에서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현지 통용 민족문자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33조] 공증서의 국외 사용이 필요하고 사용국이 요구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나 외교부가 수권한 관련국가의 재외 영사관에서 인증을 하여야 한다.

[제34조] 당사자는 규정에 따른 공증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법률원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당사자에 대하여 공증기구는 규정에 따라 공증비를 감면하여야 한다.

[제35조] 공증기구는 공증문서를 종류별로 보존하여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가 정한 공증사항 등 중요 공증문서에 대하여 공증기구의 보존기간이 도과되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방 문서국으로 이관하여 보존한다.

제5장 공증의 효력

[제36조] 공증된 민사법률행위, 법률의의가 있는 사실 및 문서는 사실 인정의 근거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증사항을 번복하기에 충분한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 급부를 내용으로 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수락한 채권문서를 공증한 경우 채무자가 불이행하거나 이행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하면 채권자는 관할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전단 규정의 채권문서상 오류가 명백하면 인민법원은 집행을 불허하고 재정서를 당사자 쌍방 및 공증기구에 송달한다.

[제38조] 법률, 행정법규에서 공증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39조] 당사자, 공증사항의 이해관계인은 공증서 상 오류를 사유로 공증서를 발급한 공증기구에 대하여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공증서의 내용이 위법하거나 사실과 부합하지 않으면 공증기구는 당해 공증서를

폐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당해 공증서는 소급하여 무효이다. 공증서 상 기타 오류가 있는 경우 공증기구는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

[제40조] 당사자, 공증사항의 이해관계인이 공증서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인민법원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6장 법률책임

[제41조] 공증기구 및 공증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또는 구를 설립한 시의 인민정부사법행정부는 경고할 수 있다. 범정이 중한 경우 공증기구에 대하여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을, 공증원에 대하여 1천원 이상 5천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위법한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한다.

- (1) 다른 공증기구, 공증원을 비방하거나 리베이트, 커미션 등 부당한 수단으로 공증업무를 유치하는 것
- (2) 규정된 비용표준을 위반하여 공증비용을 받는 것
- (3) 동시에 2개 이상의 공증기구에서 근무하는 것
- (4) 보수가 있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것
- (5) 본인 또는 친척을 위하여 공증하거나 본인 및 친척에 이해관계가 있는 공증을 하는 것
- (6)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

하도록 규정한 기타 행위

[제42조] 공증기구 및 공증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또는 구를 설립한 시의 인민정부사법행정부는 경고할 수 있고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고 3월 이상 12월 이하의 업무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위법한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인 민사법행정부가 공증원 업무허가를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1) 임의로 공증서를 교부하는 것
- (2) 진실하지 않거나 비합법적인 사항을 공증하는 것
- (3) 공증비용을 횡령하거나 공증전용물품의 점유를 침탈하거나 절취하는 것
- (4) 공증문서나 공증기록을 훼손하거나 변개하는 것
- (5) 직무상 지득한 국가기밀, 상업기밀 또는 개인 기밀을 누설하는 것
- (6) 법률, 행정법규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한 행위

고의범이나 직무상과실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증원 업무허가를 취소한다.

[제43조] 공증기구 및 공증원의 잘못으로 당사자나 공증사항의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증기구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공증기구는 배상 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공증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당사자나 공증사항의 이해관계인과 공증기구간에 배상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44조] 당사자 및 기타 개인 또는 단체는 아래 각호의 1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행정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벌을 받으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1) 허위 증빙자료를 제공하여 공증서를 편취하는 것
- (2) 허위 공증서를 사용하여 편취행위를 하는 것
- (3) 위조, 변조 또는 위조, 변조된 공증서나 공증기구의 인장을 매매하는 것

제7장 부칙

[제45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외 대(영)사관은 이 법의 규정 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한다.

[제46조] 공증비 보수표는 국무원 재정부, 가격주관부와 국무원 사법행정부가 공동으로 제정한다.

[제47조] 이 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증기구업무관리방법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령 제101호

공증기구업무관리방법은 이미 2006. 2. 21. 사법부 부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현재 공포하고 2006. 3. 1.부터 시행한다.

사법부 부장 오애영

2006. 2. 23.

제1장 총칙

[제1조] 공증기구의 심사승인관리와 업무감독을 강화하고 공증기구의 업무행위를 규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이하 공증법이라 약칭한다)과 관련법률, 법규의 규정에 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공증기구는 공증법과 이 방법에 기하여 설립한다. 공증기구 설립은 전체적 기획, 합리적 분배 원칙에 따라 총량규제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3조] 공증기구는 공증업무시 법률을 준수하고 객관성, 공정성의 원칙을 견지하고 공증업무 규범과 업무기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증기구는 지방과 전국 공증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조] 공증기구의 공증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공증직능을 행사하며 독립하여 민사책임을 부담하고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섭할 수 없고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할 수 없다.

[제5조] 사법행정기관은 공증법과 관련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공증기구의 업무를 감독·지도한다.

[제6조] 공증협회는 공증업의 자율적 단체이다. 공증협회는 공증법과 정관에 따라 공증기구의 업무활동을 감독한다.

제2장 공증기구의 설립 허가

[제7조] 공증기구의 설립은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공증기구는 현, 구를 설립하지 않는 시, 구를 설립한 시, 직할시 또는 시할구에서 설립할 수 있다. 구를 설립한 시, 직할시에서 1개 또는 수개의 공증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공증기구의 설립은 행정구획단계별로 설립하지 아니한다.

[제9조]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은 공증기구설립원칙에 따라 현지의 경제사회발전 정도, 인구수, 교통상황과 공증업무의 실제 수요 등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정구역 공증기구 설치방안을 계획하

여야 하고 현지 사정과 공증수요의 변화에
기하여 설치방안을 조정할 수 있다.

공증기구의 설치방안은 다음 사항을 포함
한다 : 설치방안 계획의 근거, 공증기구 설
치와 분포 배치, 공증업무 구역 분배, 공증
기구 설치 총량 및 지구분포계획

공증기구 설치방안 및 조정방안은 사법부
에 신고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제10조] 공증업무구역은 다음 구역 단위에
의하여 배치한다.

- (1) 현,구를 설치하지 않는 시, 시할구의
할구
 - (2) 구를 설립한 시, 직할시의 할구 또는
도시 내의 전 시할구
- 공증기구의 업무 구역은 성, 자치구, 직할
시 사법행정기관이 그 공증기구 설립 또는
변경 심사시 승인한다.

[제11조] 공증기구 설립시 다음 각 호의 조건
을 구비하여야 한다.

- (1) 자신의 명칭을 가질 것
 - (2) 고정된 장소를 가질 것
 - (3) 2인 이상의 공증원이 있을 것
 - (4) 공증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할 것
- 공증기구의 설립은 사법부가 정한 공증기
구설치방안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증기구의 책임자는 3년 이상의
업무경력이 있는 공증원 중에서 선출되어
야 하고 소재지 사법행정기관의 승인을 받
고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에 신
고한다.

[제13조] 공증기구의 설립자금의 액수는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이 정한다.

[제14조] 공증기구는 소재지 사법행정기관이
설립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
의 승인을 받는다. 공증기구 설립 신청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공증기구 설립 신청 및 조직 보고
- (2) 사용할 공증기구의 명칭
- (3) 임명할 공증원의 명단, 이력, 주민등록
증 사본 및 공증원 자격의 증빙자료
- (4) 선출된 공증기구 책임자의 사항 설명
서
- (5) 자금의 증명
- (6) 업무장소의 증명
- (7) 기타 제출이 필요한 자료

공증기구의 설립이 새로운 공증원의 배치
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공증법과 사법부
규정의 조건과 절차에 따라 보고하여 승인
을 받고 임명하여야 한다.

[제15조]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은
신청자료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심사를
마치고 설립허가를 하거나 설립을 불허하
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설립허가를 하는
경우 공증기구 업무증서를 발행한다. 설립
허가를 거부하는 경우 거부결정에서 거부
이유를 고지한다. 공증기구의 설립을 허가
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사법부에 이를 보고
한다.

[제16조] 공증기구가 현지 공증기구설치조정
방안이 업무구역의 분리, 합병 또는 변경을
허용함에 기하여 명칭, 장소를 변경하는 경
우에는 소재지 사법행정기관이 심사 후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에 보고하여
승인 절차를 처리한다. 변경허가시 사법부
에 이를 보고한다. 공증기구가 책임자를 변

경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사법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에 이를 보고한다.

[제17조]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은 설립허가를 받은 공증기구 및 공증기구의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허가결정 후 20일 내에 성급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사법부는 정기적으로 전국 공증기구의 목록을 편제한다.

제3장 공증기구의 명칭과 업무증서 (허가증서)의 관리

[제18조] 공증기구의 통칭은 공증처이다.

공증기구의 설치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칭을 사용한다.

- (1) 현, 구를 설립하지 않는 시에서 공증기구를 설립한 경우의 명명방식 : 성(자치구, 직할시) 명칭 + 현, 시 명칭 + 공증처
- (2) 구를 설립한 시 또는 시할구에서 공증기구를 설립한 경우의 명명방식 : 성(자치구) 명칭 + 시 명칭 + 자호(字號) + 공증처
- (3) 직할시 또는 시할구에서 공증기구를 설립한 경우의 명명방식 : 직할시 명칭 + 자호(字號) + 공증처

[제19조] 공증기구의 명칭은 전국통용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소수민족 자치지방의 공증기구의 명칭은 현지 통용민족문자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공증기구 명칭중의 자호(字號)는 2개 이상의 문자를 조합하여야 하며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구 내에 설립된 다른 공증기구의 명칭중의 자호(字

號)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할 수 없다. 공증기구 명칭의 내용과 문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20조] 공증기구의 명칭은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이 공증기구의 설립이나 변경 승인시에 확정한다. 공증기구는 확정된 명칭에 대하여 전용권을 가진다.

[제21조] 공증기구 업무증서는 공증기구의 설립 및 업무수행의 허가증명이다. 공증기구의 업무증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 공증기구의 명칭, 책임자, 장소, 업무구역, 증서번호, 허가일자, 허가기관 등 공증기구 업무증서는 정본과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정본은 사무실에 게시하며 부분은 검사 접수시 사용된다.

공증기구 업무증서는 사법부가 통일하여 제작한다. 증서번호 부여방법은 사법부가 정한다.

[제22조] 공증기구 업무증서는 번개하거나 대여,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공증기구가 업무증서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그 공증기구는 소재지 사법행정기관에 보고하고 성, 자치,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한다.

[제23조] 공증기구가 명칭, 장소, 책임자, 업무구역을 변경하거나 분할 합병을 한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함과 동시에 공증기구 업무증서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공증기구가 업무정지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 동안 공증기구 업무증서를 소재지 사법행정기관에 보관시켜야 한다.

제4장 공증기구 업무감독검사

[제24조] 사법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공증기구의 조직구성, 인원구성, 업무활동, 업무의 질 통제, 내부관리 등 상황을 감독한다.

[제25조]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은 공증기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독한다.

- (1) 공증기구가 법정설립 조건을 유지하는 여부
- (2) 공증기구가 허가 및 보고의무를 이행하는지 여부
- (3) 공증기구와 공증원의 업무수행
- (4) 공증업무의 수행 수준 유지여부
- (5) 법률, 법규와 사법부 규정이 정한 기타 감독 검사사항

[제26조] 구를 설립한 시와 공증기구 소재지 사법행정기관은 현지 공증기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독한다.

- (1) 조직구성 상황
- (2) 업무활동 상황
- (3) 공증품질 상황
- (4) 공증원 업무 연도 심사상황
- (5) 기록 관리 상황
- (6) 재무제도 집행 상황
- (7) 내부관리제도 수립 상황
- (8) 사법부 및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이 감독 검사를 요구한 기타 사항

[제27조] 공증기구는 건전한 업무, 공증기록, 재무, 자산 등 관리 제도를 수립하여야 하고 공증원의 업무집행행위를 감독하여야 하고 업무상 과실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공증기구는 국가가 정한 공증보수표를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공증기구는 규정에 따라 공증업무 책임보

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8조] 공증기구는 법에 따라 공증업무활동을 하여야 하고 다음 각호에 기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 (1) 진실하지 않거나 합법적이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공증서를 발행
- (2) 공증문서나 공증기록을 훼손하거나 변경하는 것
- (3) 다른 공증기구, 공증원을 비난하거나 리베이트, 커미션 등 부정한 수단으로 공증업무를 유치하는 것
- (4) 직무활동 중 취득한 국가기밀, 상업기밀 또는 개인기밀을 누설하는 것
- (5) 규정된 보수표에 위반하여 공증비를 수령하는 것
- (6) 법률, 법규 및 사법부 규정에서 금지한 기타 행위

[제29조] 공증기구는 공증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이 정한 업무구역 내에서 공증업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0조] 공증기구는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증업무상황통계표를 작성하고 매년 2월 1일 전에 소재지 사법행정기관에 그 공증기구의 연도업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도업무보고서는 진실하여야 하고 그 공증기구의 1년간의 공증업무 활동을 전면적으로 반영하고 공증업무의 질의 감독, 공증원이 업무윤리와 기율을 준수하고 공증비용징수, 재무관리, 내부제도 수립 등 방면의 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공증업무상황통계표의 통계항목 및 양식은 사법부가 제

정한다.

[제31조] 공증기구 소재지 사법행정기관은 매년 제1분기에 연도시험을 실시한다. 연도시험은 공증법의 요구와 이 방법 제26조가 규정한 감독사항에 따라 공증기구의 연도업무보고를 심사하고 소재지 사법행정기관은 일상감독검사상황과 합쳐 공증기구의 연도업무와 관리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등급과 표준은 사법부가 제정한다. 연도심사결과는 공증기구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고 상급 사법행정기관에 보고한다.

[제32조] 공증기구는 소속 공증원의 업무상황에 대하여 연도심사를 한다. 소재지 사법행정기관은 공증기구의 책임자에 대하여 연도심사를 한다.

[제33조] 공증기구에게 다음 각호의 사정이 있으면 소재지 사법행정기관은 중점 감독검사를 실시한다.

- (1) 민원이 있는 경우
- (2) 업무 중 불량기록이 있는 경우
- (3) 법정 설립조건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 (4) 연도심사과정에서 내부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제34조] 사법행정기관은 감독검사 실시시에 공증기구에게 대하여 현장검사를 할 수 있고 공증기구와 공증원에게 관련사항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증기구의 자료와 공증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관련 단체나 개인들을 조사하여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공증기구와 공증원은 사법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 검사를 수인하고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관련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허위로 보고하거나 관련 증거자료를 은닉, 위조, 훼손할 수 없다.

[제35조] 사법행정기관은 관련 공증기구의 설립, 변경, 기록 사항 연도심사, 법 및 윤리 위반행위의 처벌, 장려 등 사항의 업무기록을 하여야 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36조] 공증기구가 공증법 제41조, 제42조가 규정한 각 행위 중의 하나에 해당하면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 또는 구를 설립한 시의 행정기관이 공증법의 규정에 기하여 처벌을 한다. 공증기구가 공증법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구역 밖의 공증을 수리한 경우에는 소재지 구를 설립한 시의 사법행정기관이 이를 중지시키고 개정을 명한다.

[제37조] 사법행정기관이 공증기구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벌을 함에 있어 관련법률, 법규 및 사법부의 관련행정처벌 절차의 규정을 따른다.

[제38조] 사법행정기관은 공증기구에게 대하여 처벌 결정을 하기 전에 공증기구에게 위법행위 사실, 처벌이유, 근거 및 법에 따라 가지는 권리를 고지하여야 한다. 구두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기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공증기구는 진술과 변소할 권리를 가지며 법에 따라 증언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공증기구가 행정처벌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9조] 사법행정기관은 감독검사 실시 및 연도검사 과정에서 공증기구에게 위법행위

가 있는 것을 발견하거나 관련 민원신고 등을 받은 때에는 즉시 조사하고 전면적,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사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조사를 받는 공증기구는 조사기관에 대하여 사실을 진술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 사법행정기관은 공증기구의 위법행위를 조사함에 있어 공증기구의 위법행위의 조사 확인을 공증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을 받은 공증협회는 사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법행정기관에게 행정처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 공증협회는 정관 및 관련 업무규범에 기하여 공증기구의 업무규범과 업무기율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위반 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업무처분을 한다. 공증협회가 공증기구의 업무규범 및 업무기율위반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증법의 규정에 기하여 행정처벌을 하여야 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권을 가지는 사법행정기관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42조] 공증기구 및 공증원이 과실로 인하여 당사자, 공증사항의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증기구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공증기구는 배상 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공증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43조] 사법행정기관 및 그 업무수행자가 공증기구의 설립허가, 공증기구 업무증서관리, 공증기구에 대한 감독검사 실시, 연도심사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사적인 행위를 하거나 공증

기구가 법에 따라 법에 따라 공증직능을 독립하여 행사하는 행위를 방해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책임 있는 자의 행정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부칙

[제44조] 이 방법에서 공증기구 소재지 사법행정기관이라 함은 현지 공증기구설치방안의 규정에 기하여 당해 공증기구 설립 책임을 지고 일상 감독, 직능 지도실시 책임을 부담하는 사법행정기관을 말한다.

[제45조] 공증법과 이 방법을 실시하기 전에 설립된 공증기구에 대하여 그 설립, 분포, 명칭, 업무구역 및 관리체제가 공증법과 이 방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이 조정방안을 기획하여 사법부에게 보고 후 실시한다.

[제46조] 이 방법은 사법부가 해석한다.

[제47조] 이 방법은 2006. 3. 1.부터 시행한다.

공증원업무관리방법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령 제102호

공증원업무관리방법은 이미 2006년 3월 8일 사법부부무회의의 심의를 통과하고 현재 공포되며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사법부가 1995년 6월 2일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공증원주책관리방법(사법부령 제39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사법부 부장 오애영

2006. 3. 14.

제1장 총칙

[제1조] 공증원의 임용관리와 업무감독을 강화하고 공증원의 업무행위를 규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이하 공증법이라 약칭한다) 및 관련법률, 법규의 규정에 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공증원이라 함은 공증법이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법정임용절차를 거쳐 공증원 업무증서(허가증서)를 취득하고 공증기구에서 공증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배치할 공증원의 수는 공증기구의 설치 상황과 공증업무의 수요에 기하여 정한다. 공증원 배치방안은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이 편제하고 결정한 후 사법부에 보고한다.

[제3조] 공증원의 법에 의한 업무는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간섭할 수 없다. 공증원은 근로에 대하여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고 보험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임하거나 제소 또는 고발할 권리가 있다. 법정

사유와 법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면직되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

[제4조] 공증원은 법, 업무윤리 및 업무기율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공증직무를 수행하고 직무기밀을 지켜야 한다. 공증원은 지방 및 전국 공증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 사법행정기관은 공증법 및 관련법률, 법규, 규정에 기하여 공증원의 업무를 감독, 지도한다.

[제6조] 공증협회는 공증업의 자율적 조직이다. 공증협회는 공증법과 정관에 기하여 공증원의 업무활동을 감독한다.

제2장 공증원의 임용조건

[제7조] 공증원으로 임용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1)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질 것
- (2) 연령이 25세 이상 65세 이하일 것
- (3) 법과 기율을 준수하고 품행이 양호할 것
- (4) 국가 사법시험을 통과할 것

(5) 공증기구에서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가지거나 3년 이상의 기타 법률직업 경력과 공증기구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지고 시험에 합격할 것

[제8조] 이 방법 제7조 제1호,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부합하고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를 구비하고 이미 원래의 직장을 떠나 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증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 (1) 법학교육, 연구업무에 종사하고 고급 직책을 가진 자
- (2)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심판, 검사, 법제업무, 법률업무 종사경력이 10년이 된 공무원, 변호사

[제9조] 다음 각호의 사항 중 1에 해당하면 공증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1) 민사행위능력이 없거나 제한된 자
- (2) 고의범 또는 직무상 과실범죄를 행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자
- (3) 공직에서 해임된 자
- (4) 업무증서를 취소당한 자

제3장 공증원 임용절차

[제10조] 이 법 제7조에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배치될 공증기구의 추천을 거쳐 소재지 사법행정기관의 심사 의견을 받아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기관에 승인을 신청한다. 승인신청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공증원 임용신청서
- (2) 공증기구의 추천서
- (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이력서,

3년 이상 기타 법률직업 경력을 가진 자는 동시에 그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4) 신청인의 법률직업 자격증서 사본
- (5) 공증기구가 발행한 신청인의 실무감정 및 소재지 사법행정기관이 발행한 실무고시합격 의견서
- (6) 소재지 사법행정기관의 신청인에 대한 심사의견
- (7) 기타 제출이 필요한 자료

[제11조] 이 방법 제8조가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증원으로 배치될 공증기구의 추천을 경유하여야 하고 소재지 사법행정기관이 심사의견을 제공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에 순차 통보하여 심사한다. 심사청구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공증원 임용신청서
- (2) 공증기구의 추천서
- (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이력서
- (4) 법학교육, 연구업무에 종사하고 고급 직책을 가진 증명서 또는 학사 이상의 학력의 증명과 심판, 검사, 법제업무, 법률업무 종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증명서
- (5) 신청인이 이미 원래의 직장을 이직한 증명
- (6) 소재지 사법행정기관이 신청인에 대하여 심사한 의견
- (7) 기타 제출이 필요한 자료

[제12조]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은 심사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규정된 조건과 공증원 배치방안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을 공증원으로 임용함에 동의하는 의견을 공증

원 심사표에 기재하고 사법부에 임용 제청한다.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증원 배치방안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을 공증원에 임용함에 부동의 하는 결정을 하고 서면으로 신청인과 소재지 사법행정기관에 통지한다.

[제13조] 사법부는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의 공증원 임용제청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공증원 임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사법부는 공증원 제청자료에 의문이 있거나 관련된 민원이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용제청기관에게 다시 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은 사법부의 공증원 임용결정서를 받은날부터 10일 내에 신청인에게 공증원 업무증서를 발행하고 서면으로 소재지 사법행정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공증원이 업무기구를 변경하는 경우 소재지 공증기구의 동의와 임용할 공증기구의 추천을 받아서 소재지 사법행정기관의 동의하에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에게 변경승인 절차를 신청하여야 한다. 공증원이 다른 성, 자치구, 직할시로 업무기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의 동의하에 임용될 공증기구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에게 변경승인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공증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면 소재지 사법행정기관은 그 사정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날부터 30일 내에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에게 통보하여

사법부에 대하여 면직을 신청한다.

- (1)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 (2) 연령이 65세에 달하거나 건강을 이유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는 자
 - (3) 공증원의 직무를 사임하는 자,
- 공증원의 업무증서가 취소된 경우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은 직접 사법부에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 면직을 제청하는 경우에는 공증원 면직 심사표와 법정 면직 사유에 부합하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법부는 면직 제청자료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공증원 면직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은 사법부가 한 임명, 면직 또는 공증원의 업무기구 변경 승인에 대하여 임명결정이나 변경결정을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성(省)급 신문 지상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사법부는 임명 또는 면직결정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에 공고를 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전국 공증원 명부를 편제하여야 한다.

제4장 공증원 업무증서의 관리

[제18조] 공증원 업무(허가)증서는 공증원이 법정 임용절차를 거쳐 공증기구에서 공증 업무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허가증이다. 공무원 업무증서는 사법부가 통일적으로 제작한다. 증서부여방법은 사법부가 제정한다.

[제19조] 공증원 업무증서는 공증원 본인에게 전속, 사용되는 것으로 수정, 저당,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공증원 업무증서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소재지 공증기구가 이를 증명하여 소재지 사법행정기관이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에게 신청하여 재발급한다. 업무증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소재지 공증기구는 성(省)급 신문지상에 증서폐기성명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20조] 공증원이 업무기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이 심사하여 공증원 업무증서를 교환 발급한다. 공증원이 업무정지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공증원의 업무증서를 소재지 사법행정기관이 업무정지 기간 동안 보관한다. 공증원이 공증원 업무증서를 취소하는 처벌을 받거나 기타 법정 사유로 인하여 면직되는 경우 그 공증원 업무증서를 회수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이 이를 취소한다.

제5장 공증원 업무 감독 검사

[제21조] 사법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건전행정감독관리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공증협회는 정관에 기하여 건전한 업무자율제도를 수립하고 공증원의 업무활동의 감독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공증원의 업무상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2조] 공증기구는 규정에 따라 각항 내부관리 제도를 수립·완비하여야 하고 공증원의 업무행위 감독을 위하여 공증원의 업무상 과실책임 추궁 제도를 수립하고 공증원 업무연도시험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공증기구는 공증원이 법에 따라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편의와 조건을 제공하고 재직기간 중 법에 따른 합법적 권익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23조] 공증원은 법에 따라 공증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1) 동시에 2개 이상의 공증기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
- (2) 보수가 있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것
- (3) 본인 및 가까운 친척을 위하여 공증을 하거나 본인 및 가까운 친척에 이해관계가 있는 공증을 하는 것
- (4) 임의로 공증서를 발행하는 것
- (5) 진실이 아니거나 합법적이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공증서를 발행하는 것
- (6) 공증비를 횡령하거나 공증전용 물품의 점유를 침해하거나 절취하는 것
- (7) 공증문서나 공증기록을 훼손, 변개하는 것
- (8) 직무활동 중 취득한 국가기밀, 상업기밀 또는 개인기밀을 누설하는 것
- (9) 법률, 법규 및 사법부 규정이 금지하는 기타 행위

[제24조] 공증기구는 매년 1월간 소속 공증원의 연간처리 공증업무의 정황과 직무윤리, 직무기율 준수 상황에 대하여 심사한다. 심사결과는 서면으로 공증원에게 고지하고 소재지 사법행정기관에 보고한다. 공증기구의 책임자가 관리 직책을 수행하는 정황에 대하여 소재지 사법행정기관이 심사한다. 심사결과는 서면으로 공증기구의 책임자에게 고지하고 직상급 사법행정기관

에 보고한다. 연도심사 과정에서 공증원의 업무 중 문제가 드러나면 공증기구는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공증기구의 책임자의 관리중 문제에 대하여는 소재지 사법행정기관이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25조] 공증원 및 공증기구의 책임자에 대한 민원 및 신고가 있는 경우, 업무중 불량 기록이 있거나 연도심사에서 문제를 발견한 경우에는 소재지 사법행정기관은 그 진행사항을 중점 감독·지도하여야 한다. 연도심사에서 문제를 발견한 공증원 및 공증기구의 책임자에 대하여 소재지 또는 구를 설치한 시의 사법행정기관은 조직관리에 관한 연수를 실시한다.

[제26조] 사법행정기관은 감독검사를 실시하고 공증원이 공증업무를 처리하는 정황을 검사하고 공증원 및 소재지 공증기구에 대하여 관련 정황의 설명을 요구하고 관련 자료와 공증기록을 열람하고 관련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조사하고 관련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공증원 및 소재지 공증기구는 사법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검사를 거절할 수 없고 허위 보고나 관련 증거자료의 은닉, 위조, 훼손을 할 수 없다.

[제27조] 공증원은 사법행정기관과 공증협회가 하는 직무연수를 받아야 한다. 공증원이 매년 참가하여야 하는 연수시간은 4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사법행정기관은 공증원 직무연수규칙과 방안(方案)을 제정하고 공증협회는 연도별, 구체적 실시계획에 따라 이를 조직, 실시할 책임을 부담한다. 공증기구는 공증원이 직무연수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제28조] 공증원의 업무소재지 사법행정기관은 공증원의 업무기록을 수립하여 공증원 임용심사, 임명정황 연도심사 결과, 감독검사 결과 및 상벌 상황을 기재한다. 공증원이 다른 성, 자치구, 직할시로 업무기구를 변경한 경우에는 원래의 업무소재지 사법행정기관이 변경 후 업무소재지 사법행정기관에게 당해 공증원의 업무기록을 이송한다.

제6장 법률책임

[제29조] 공증원이 공증법 제41조, 제42조에 열거한 행위 중의 1에 해당하면 성, 자치구, 직할시 또는 구를 설치한 시의 사법행정기관이 공증법의 규정에 기하여 처벌한다. 공증원에게 법에 따라 공증원 업무증서를 취소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재지 사법행정기관이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에게 보고하여 결정한다.

[제30조] 사법행정기관이 공증원에 대하여 행정처벌을 하는 경우에는 법률, 법규 및 사법부의 관련 행정처벌절차규정에 따라야 한다. 사법행정기관이 공증원의 위법행위를 조사함에 있어 공증협회에게 공증원의 위법행위의 조사확인을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 사법행정기관은 공증원에 대하여 행정처벌결정을 하기 전에 밝혀진 위법 행위 사실, 처벌의 이유 및 근거를 고지하여야 하고 법에 의하여 가지는 권리도 고지하여야 한다. 구두로 고지한 경우에는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공증원은 진술과 변명의

권리를 가지고 법에 따라 증언을 청취할 것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공증원이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2조] 공증협회는 정관과 관련 업무규범에 기하여 공증원의 업무윤리 및 업무기율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의 경중에 따라 상응한 업무처분을 한다. 공증협회는 공증원의 업무윤리 및 업무기율위반행위 조사과정에서 공증법의 규정에 기하여 행정처벌을 할 사정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사법행정기관에 통보 처리하여야 한다.

[제33조] 공증원의 귀책사유로 당사자, 공증사항의 이해관계인에게 손실을 가한 경우 공증기구는 법에 의하여 배상 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공증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34조] 사기, 수뇌 등 부정수단으로 공증원으로 임명되고 공증원 업무증서를 받은 경우에는 증거조사를 거쳐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이 사법부에 원래의 임용을 취소하는 결정을 제정하여 공증원 업무증서를 취소한다.

[제35조] 사법행정기관 및 그 직원이 공증원의 직무 임면, 공증원의 업무증서 관리, 공증원의 업무활동에 대한 감독검사 실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거나 공증원의 법에 따른 업무행위를 간섭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귀책자의 행정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장 부칙

[제36조] 공증원 배치방안은 사법부에 의하여 관련 공증업의 전체 발전 계획과 요구를 준수하고 현지 공증기구의 설치 분배, 공증업무구역의 배분, 공증업무의 전체 수요와 지역 분포상황, 현지 경제사회 발전 및 인구 상황에 기하여 공증원의 연평균 공증수량 및 공증능력을 감안, 편제 및 심사하고 현지 상황 및 공증수요의 변화 진행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37조] 공증원 업무연도심사의 구체적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이 제정한다. 심사방법은 심사업무의 원칙, 심사의 내용, 심사의 등급과 표준, 심사의 절차와 시간 분배를 포함한다.

[제38조] 공증법 및 이 방법의 시행 이전에 이미 공증원으로 임용된 자의 직무는 계속하여 유효하고 공증법과 이 방법에 의하여 관리된다.

[제39조] 이 방법에서 공증원 업무소제지 사법행정기관이라 함은 공증원 소속 공증기구를 설립할 책임을 부담하고 그 공증기구 및 공증원에 대하여 일상 감독을 실시하고 지도하는 직능을 가진 사법행정기관이다.

[제40조] 이 방법은 사법부가 해석한다.

[제41조] 이 방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사법부 1995. 6. 2.에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공증원주책관리방법(사법부령 제39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공증절차규칙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령 제103호

공증절차 규칙은 이미 2006. 5. 10.에 사법부 심의를 통과하고 현재 공포하여 2006. 7. 1.부터 시행한다. 사법부가 2002. 6. 18. 공포한 공증절차규칙(사법부령 제72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사법부 부장 오영에
2006. 5. 18.

제1장 총칙

[제1조] 공증절차를 정하고 공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공증법(이하 공증법이라 약칭한다) 및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기하여 본 규칙을 제정한다.

[제2조] 공증기관은 공증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률을 준수하고 객관성, 공증의 원칙을 유지하며 공증업무의 규범과 직업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공증기관은 법에 따라 공증직능을 독립하여 행사하고 독립하여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위법하게 간섭할 수 없고 공증기관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할 수 없다.

[제4조] 공증기관은 공증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촉탁을 수리하고 공증업무를 처리하며 공증기관의 명의로 공증서를 교부한다.

[제5조] 공증기관은 공증원을 선정하여 공증법과 이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증업무를 처리하고 교부하는 공증서 상에 서

명하여야 한다. 공증법과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공증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해 공증원은 직접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공증기관의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없다.

[제6조] 공증기관과 공증원이 공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증법 제13조 제23조가 금지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공증기관의 다른 직원 및 이 규칙에 의하여 공증업무와 접하는 관련자는 공증업무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국가기밀, 상업기밀 또는 개인기밀을 누설할 수 없다.

[제7조] 공증기관은 건전한 공증업무관리제도와 공증품질관리제도를 수립하여야 하고 공증원의 직무수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 사법행정기관은 공증법과 이 규칙, 규정에 의하여 공증기관과 공증원의 업무활동과 절차규정 준수 상황을 감독, 지도한다. 공증협회는 정관과 업무규범에 의하여 공증기관과 공증원의 업무활동과 절차규정 준수 상황을 감독한다.

제2장 공증 당사자

[제9조] 공증 당사자는 공증사항과 이해관계 있는 자 및 자신의 명의로 공증촉탁을 한 자, 공증업무로 인하여 권리를 가지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이다.

[제10조]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자 또는 제한된 자는 공증촉탁시 후견인이 대리 촉탁하여야 한다. 법인이 공증촉탁하는 경우 법정 대표자가 대표하여야 한다. 기타 단체가 공증을 촉탁하는 경우 그 단체의 책임자가 대표하여야 한다.

[제11조] 당사자는 타인에게 위임하여 공증촉탁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단 유언, 유증 부양협의, 증여, 인지, 입양관계, 파양관계, 생존상환, 위임, 성명, 보증 기타 자연인의 인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증사항은 본인이 직접 촉탁하여야 한다. 공증원, 공증기구의 다른 직원은 당사자가 그 공증기구에 공증을 촉탁함에 있어 대리할 수 없다.

[제12조]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에 거주하는 당사자는 재산승계, 재산권익처분, 인신관계 변경 등 중요한 공증사항을 타인에게 위임하여 대리로 촉탁하는 경우 그 위임장을 거주지의 공증인(기구)에서 공증하거나 사법부가 지정한 기구를 경유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국외에 거주하는 당사자가 타인에게 위임하여 전단에 규정한 중요한 공증사항을 촉탁하는 경우 그 위임장은 거주자의 공증인(기구) 국외 중국대(영)사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3장 공증업무구역

[제13조] 공증업무구역은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이 공증법 제25조 및 공증기구 업무관리방법 제10조의 규정 및 현지 공증기구 설치방안에 의하여 공증기구가 수리할 것으로 정한 공증업무의 지역범위이다. 공증기구의 업무구역은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이 당해 공증기구 설립 또는 변경 심사시 이를 정한다. 공증기구는 지정된 업무구역 내에서 공증업무를 수리한다.

[제14조] 공증사항은 당사자의 주소지, 거소지, 행위지 또는 사실발생지의 공증기구가 수리한다. 부동산을 포함한 공증사항은 부동산 소재지의 공증기구가 수리하고 부동산의 위탁, 성명(聲明), 증여, 유언의 공증사항을 포함한 것은 전단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제15조] 2인 이상의 당사자가 동일 공증사항을 공동으로 촉탁하는 때에는 행위지, 사실발생지 또는 그 중 1인의 당사자의 주소지, 거소지의 공증기구에 촉탁할 수 있다.

[제16조] 당사자가 2개 이상의 공증기구에게 촉탁을 한 경우 가장 먼저 촉탁받은 공증기구에서 처리한다.

제4장 촉탁과 수리

[제17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공증기구에게 공증을 촉탁한 경우 공증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공증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신청인 및 대리인의 기본적 사항
- (2) 촉탁 공증사항 및 공증서의 용도
- (3) 촉탁 공증문서의 명칭
- (4) 제출하는 증빙자료의 명칭, 수량 및 관련 증

인의 성명, 주소, 연락방법

- (5) 촉탁일자
- (6) 기타 보충적 설명

촉탁인은 신청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서명 날인할 수 없는 경우 무인한다.

[제18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공증을 촉탁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자연인의 신분 증명, 법인의 자격증명 및 법정 대표자의 신분증명, 기타 단체의 자격증명 및 책임자의 신분증명
- (2) 타인에게 위임하여 대리 촉탁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위임장, 법정대리인 또는 기타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 (3) 공증을 촉탁하는 문서
- (4) 촉탁 공증사항의 증빙자료, 재산관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재산권을 증명하는 서류
- (5) 촉탁공증 사항과 관련 있는 기타 자료

[제19조] 다음 각호의 조건에 부합하는 촉탁에 대하여 공증기구는 수리할 수 있다.

- (1) 촉탁인과 촉탁공증사항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2) 촉탁인 간에 촉탁공증사항에 대하여 분쟁이 없는 경우
- (3) 촉탁공증사항이 공증법 제11조의 규정의 범위에 부합하는 경우

(4) 촉탁공증사항이 공증법 제25조의 규정에 부합하고 그 공증기구가 그 업무구역 내에 있으면 촉탁업무를 수리할 수 있다. 법률, 행정법규가 공증사항으로 규정하고 전 1, 2, 4호에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면 공증기구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 2호에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촉탁신청에 대하여 공증기구는 수리하지 아니하고 촉탁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의 1 제4항에 부합하지 않으면 수리할 수 없고 수리 가능한 공증기구에 신청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0조] 공증기구는 공증촉탁을 수리한 후 촉탁인에게 수리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촉탁인 또는 대리인은 영수증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21조] 공증기구가 공증촉탁을 수리한 후 당사자에게 촉탁한 공증사항의 법적의의 및 발생가능한 법률 효과를 고지하여야 하고 공증과정 중 취득하는 권리와 부담할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고지한 내용, 방식 및 시간은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22조] 공증기구가 공증촉탁을 수리한 후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로부터 공증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공증업무가 종결된 후 공증비용이 예납한 액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공증기구는 법률 원조 조건을 충족하는 당사자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공증비를 감면하여야 한다.

[제23조] 공증기구는 공증촉탁을 수리한 후 담당 공증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당해 공

증원의 회피를 요구하고 공증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공증원은 회피하여야 하며 공증기구는 다른 공증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5장 심사

[제24조] 공증기구는 공증촉탁을 수리한 후 각각의 공증사항에 대한 규칙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 (1) 당사자의 수, 신분, 공증촉탁 자격 및 권리
- (2)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진실한지 여부
- (3) 촉탁공증 문서의 내용이 완비되어 있고 의미가 명백하며 서명, 날인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 (4) 제출된 증빙자료가 진실, 합법, 충분한지 여부
- (5) 촉탁 공증사항이 진실, 합법적인지 여부

[제25조] 당사자는 공증기구에 촉탁공증 사항과 관련 있는 사항을 사실대로 설명하여야 하고 제출하는 증빙자료는 진실, 합법, 충분하여야 한다. 공증기구는 심사과정에 있어서 촉탁공증 사항의 진실성, 합법성에 의문이 있거나 당사자의 정황설명이나 제출한 증빙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완비되지 아니하거나 의문이 있다고 판단되면 당사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거나 보충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당사자가 관련사항을 설명할 것을 거부하거나 보충증빙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이 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26조] 공증기구가 심사중 촉탁 공증사항 및 당사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에 대하여 관련 규칙에 따라 확인이 필요하거나 의문이 있는 경우 확인을 하거나 다른 지역에 있는 공증기구에 대신 확인하여 줄 것을 위탁할 수 있다. 관련 단체나 개인은 법에 따라 이를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 공증기구는 다음 각호의 방식을 택하여 공증사항과 관련있는 사항 및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 (1) 당사자, 공증사항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확인
- (2) 증인에 대한 질문으로 확인
- (3) 관련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관련사항을 파악하거나 관련 서증, 물증, 자료 등 증빙자료의 검증에 의하여 증거의 수집
- (4) 현장검증으로 확인
- (5) 전문기구나 전문가에게 감정, 검사, 번역을 위탁

[제28조] 공증기구가 확인함에 있어 관련법률, 법규 및 관련 공증규칙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증기구가 인원을 외부에 파견하여 확인하는 경우 2인을 파견하여야 한다. 단 서증을 확인하거나 수집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특별한 상황에서 1인만이 외부에서 확인하는 경우 증인 1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제29조] 당사자, 공증사항의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증인에 대한 질문방식으로 공증사항의 관련사항 및 증빙자료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질문 상대방이 가지는 권리, 부담하는 의무 및 법률상의 책임을 고지하여야 한다. 질문내용은 기록하여야 한다. 질문기록

에는 질문일시, 장소, 질문자, 기록자, 질문 사유, 피질문자의 기본사항, 고지내용, 질문대화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질문기록은 상대방에게 확인 후 서명이나 날인 무인을 받아야 한다. 기록 중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피질문자의 날인 또는 무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 당사자, 공증사항의 이해관계인, 증인 또는 관련 단체, 개인에 대하여 확인 또는 공증사항의 관련 증빙자료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관련자료의 복사, 증명원본, 기록자료 또는 실물증거의 사진을 찍고 설명문을 부기하여야 하며 사본, 사진, 설명은 원본이나 증거와 부합하여야 하고 자료, 원본, 물증의 소유자나 보관인이 사본 또는 사진 및 설명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31조] 현장검증 방식으로 공증사항 및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한 경우 검증기록을 작성하고 확인자 및 증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도화, 사진, 영상 또는 녹음 등의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32조] 전문기구나 전문가에게 공증문서나 공증사항의 증빙자료에 대한 감정, 검사, 번역을 위탁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고지하여 당사자가 위탁처리하게 하거나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대신 처리하여야 한다. 감정의견, 검사결론, 번역자료는 관련 전문기구 및 감정인, 검사자, 번역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감정촉탁, 검사, 번역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가 지불하여야 한다.

[제33조] 공증기구가 다른 지역의 공증기구

에게 위탁하여 공증사항 및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는 경우 필요로 하는 확인 사항 및 내용에 대하여 위탁서를 교부하여 명확하게 요구하여야 한다. 위탁을 받은 공증기구는 위탁서를 받은 후 1개월 내에 확인을 마쳐야 한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확인방법이 없는 경우 이를 위 기한 내에 확인을 위탁한 공증기구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34조] 공증기구는 심사과정에 있어 촉탁 공증문서의 내용이 완비되어 있지 않거나 표현이 부정확한 경우 당사자로 하여금 보정하거나 수정하도록 권유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보정, 수정을 거부하는 경우 업무기록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요구하는 경우 공증기구는 당사자를 대리하여 초안을 작성하거나 촉탁 공증문서를 수정할 수 있다.

제6장 공증서의 교부

[제35조] 공증기구는 심사를 마쳐 촉탁 공증사항이 공증법, 이 규칙 및 관련 공증규칙의 규정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면 수리한 날로부터 15 업무일 내에 당사자에게 공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불가항력이나 보충 증빙자료나 필요한 관련 정황의 확인으로 인하여 소요된 시간은 전단 규정의 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당사자에게 이를 즉시 고지하여야 한다.

[제36조] 민사법률행위의 공증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 (1) 당사자가 그 행위의 자격과 필요한 민사행위능력을 모두 가질 것

- (2)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진실할 것
 - (3) 그 행위의 내용과 형식이 합법적이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을 것
 - (4) 공증법이 규정하는 기타의 조건
- 민사법률행위 공증에 대한 별도의 규칙이 특수한 요건을 요구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37조] 법적의의가 있는 사실 또는 문서의 공증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 (1) 그 사실 또는 문서가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을 것
 - (2) 사실 또는 문서의 진실성, 무결점성
 - (3) 사실 또는 문서의 내용과 형식이 합법적이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을 것
 - (4) 공증법이 규정하는 기타 조건
- 법적의의가 있는 사실이나 문서 공증에 대한 별도의 공증규칙이 달리 특수한 요건을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제38조] 문서상의 서명, 날인, 일자의 공증은 그 서명, 날인, 일자가 정확하고 사실에 부합하여야 하며 문서의 부분, 사본 등의 공증은 그 문서의 내용이 원본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39조] 강제집행의 효력을 가지는 채권 문서의 공증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 (1) 채권문서는 금전, 물품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내용으로 할 것
- (2) 채권·채무의 관계가 명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권문서 상 관련급부의 내용에 의문이 없을 것
- (3) 채권문서 중 채무자가 불이행 또는 불

완전 이행시 채무자가 즉시 강제집행을 수락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 (4) 공증법이 규정하는 기타 조건을 충족할 것

[제40조] 공증법, 이 규칙 및 관련 공증규칙이 규정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공증사항은 담당 공증원이 공증서를 작성하고 증명문서, 당사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와 사실확인자료, 공증심사 의견과 함께 공증기구의 책임자나 지정된 공증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승인이 불필요하다고 규정된 공증사항은 제외한다. 공증기구의 책임자나 승인 담당 지정 공증원은 자기가 맡은 공증사항을 승인할 수 없다.

[제41조] 공증사항을 심사하고 공증서를 기안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사하여야 한다.

- (1) 신청 공증사항 및 그 문서가 진실하고 합법적일 것
- (2) 공증사항의 증빙자료가 진실, 합법, 충분할 것
- (3) 공증절차가 공증법, 이 규칙 및 관련 공증규칙의 규정에 부합할 것
- (4) 공증서 초안의 내용, 표현, 형식이 관련 규정에 부합할 것

중대하고 복잡한 공증사항을 승인할 때에는 승인전에 공증기구 전체의 토론을 거쳐야 한다. 토론 상황 및 결정된 의견은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42조] 공증서는 사법부 규정의 양식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공증서는 다음 각 호의 주요한 내용을 포함한다.

- (1) 공증서 번호

- (2) 당사자 및 대리인의 기본사항
 - (3) 공증의 취지
 - (4) 담당공증원의 서명(기명), 공증기구의 날인
 - (5) 교부일자
- 증명할 문서를 공증하는 취지는 공증서의 구성부분이다. 공증서의 양식에 대한 관련 공증규칙이 특별한 요건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43조] 공증서 작성시 전국 통용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민족자치구에서는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현지 통용 민족문자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두가지 언어의 공증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에서 사용하는 공증서는 전국 통용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국외 사용용도 공증서는 전국 통용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필요가 있고 당사자가 요구하는 경우 외국어 번역본을 공증서에 첨부할 수 있다.

[제44조] 공증서는 발행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승인을 필요로 하는 공증사항은 승인자의 승인일이 공증서의 발행일이다.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공증사항은 담당공증원의 서명일자가 공증서의 발행일이다. 현장 감독(입회) 종류의 공증으로 현장에서 공증취지를 선언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선언일자가 공증서의 발행일이다.

[제45조] 공증기구가 작성한 공증서 정본은 각 당사자가 1매씩 수령한다.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수통의 부분을 작성할 수 있다. 공증기구는 공증서원본(승인안, 서명안) 및 정본 1부를 보존한다.

[제46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증서를 공

증기구에서 수령할 수 있다. 당사자가 요구하는 경우 공증기구는 발송할 수 있다.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증서 수령시 영수증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47조] 공증서에 영사의 인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관련 규정이나 당사자의 위임에 따라 공증기구는 공증서의 인증을 대신 할 수 있다.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7장 공증거절 및 공증중지

[제48조] 공증사항이 다음 각호 중 1에 해당하면 공증기구는 공증을 거절하여야 한다.

- (1)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자나 제한된 자가 후견인에 의하여 대리 촉탁하지 않는 경우
- (2) 당사자와 촉탁 공증사항간에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 (3) 촉탁 공증사항이 전문기술 감정, 평가에 속하는 경우
- (4) 당사자간에 촉탁 공증사항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 (5) 당사자가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숨기거나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6) 당사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불충분하고 보정할 방법이 없거나 증빙자료의 보정을 거절한 경우
- (7) 촉탁공증 사항이 진실하지 않고 합법적이지 않은 경우
- (8) 촉탁공증 사항이 사회윤리에 반하는 경우
- (9) 당사자가 규정에 따른 공증비의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제49조] 공증을 거절하는 경우 담당공증원은 서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증기구의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공증거절결정은 서면으로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공증거절시에 공증기구는 거절의 원인과 책임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의 공증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50조] 공증사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면 공증기구는 공증을 중지한다.

- (1)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그 공증사항이 6개월 내에 처리될 수 없는 경우
- (2) 공증서 발행 전 당사자가 촉탁을 철회하는 경우
- (3) 공증을 촉탁한 자연인이 사망하거나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소멸하거나 공증촉탁을 계속 할 수 없거나 공증을 계속함의 의미가 없는 경우
- (4) 당사자가 공증기구 및 담당공증원이 규정에 따른 절차와 기한에 따라 공증업무를 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 (5) 기타 중지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제51조] 공증을 중지한 경우 담당공증원은 서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증기구의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공증중지결정은 서면으로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증이 중지된 경우 공증기구는 중지의 원인 및 책임에 따라 공증비용의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8장 특별규정

[제52조] 공증기구가 현장 경매, 복권당첨 등 현장에서 감독하여 공증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공증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담당공증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심사, 현장감독을 하고 그 진실성, 합법성을 증명하며 현장에서 공증을 선언하고 선언 후 7일 내에 공증서를 당사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그 공증서는 공증선언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현장감독 공증을 함에 있어 담당공증원이 당사자에게 조작, 규칙위반, 법률과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공증할 수 없다.

[제53조] 공증기구가 유언공증을 함에 있어서는 2인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담당공증원은 전 과정을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 특수한 사정으로 1인의 공증원이 처리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1인의 증인으로 하여금 현장에 입회하게 하여야 하고 그 증인은 현장 기록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54조] 공증기구가 외부에 공증원을 파견하여 증거보전의 공증을 하는 경우에는 2인이 공동으로 하여야 하고 담당공증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처리하여야 한다. 증거보전 공증시에 담당공증원이 당사자가 법률, 법규가 금지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공증을 할 수 없다.

[제55조] 채권문서가 공증으로 채무자의 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효력을 가지는 경우 공증기구는 채권자의 신청에 기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집행증서는 법률이 정한 집행기한 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집행

증서는 신청인, 피신청집행인, 신청집행표와 신청집행기한을 기재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이미 이행한 부분은 신청집행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채무자의 불이행이나 불완전이행으로 발생하는 위약금, 채납금, 이자 등은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신청집행표에 추가할 수 있다.

[제56조] 공증한 사항에 대하여 이행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증서를 발행한 공증기구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조정을 할 수 있다. 조정 후 당사자간에 새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공증을 촉탁하는 경우 공증기구는 이를 공증할 수 있다. 조정 불성립의 경우 공증기구는 당사자에게 그 분쟁을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9장 공증등록 및 기록보존

[제57조] 공증기구는 공증시 공증등록부를 기재하여야 하고 등록분류제도를 제정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은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공증사항 종류별, 당사자 성명(명칭), 대리인(대표자) 성명, 수리일자, 담당자, 승인자(서명자), 종결방식, 종결일자, 공증서 번호 등 공증등록부는 연도별로 만들어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58조] 공증기구는 공증서를 발행하거나 공증을 거절하거나 공증을 중지하는 결정을 한 후 사법부, 국가문서보존국이 제정한 관련 공증문서 기록제조보존 및 공증기록관리 규정에 따라 담당공증원이 공증문서

와 관련 자료를 3개월 내에 정리, 분류 기록하여 보존국에 이송 보존하여야 한다.

[제59조] 공증기구가 촉탁을 수리한 후 담당공증원은 즉시 기록보존 준비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관련 증빙자료의 수집, 질문 기록의 정리, 확인사항의 관련 재료 등의 수집을 개시한다. 기록에 첨부할 수 없는 원본 또는 실물증거에 대하여는 규정에 따라 원본의 사본(복제), 증거물의 사진 및 설명문의 기재를 기록에 첨부한다.

[제60조] 공증기록은 공증사항의 종류별, 내용에 따라 보통기록, 기밀기록으로 분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공증기록은 공증사항의 종류별 용도 및 기타 증거 가치에 따라 보존기한을 정한다. 보존기한은 단기, 장기, 영구의 3종으로 나눈다. 국가기밀, 유언 공증사항을 포함한 것은 기밀기록으로 한다.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공증기록은 보통기록으로 하여 보존한다. 공증기구 내부의 공증사항에 대한 토론 의견 및 관련 제안 회시 등의 자료는 부권을 만들어 정권과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장 공증분쟁의 처리

[제61조] 당사자가 공증서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증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그 공증서를 교부한 공증기구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공증사항의 이해관계인이 공증서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를 알거나 알 수 있는 날부터 1년 내에(자신이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는 예외이다) 그 공증서를 교부한

공증기구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공증서 교부일로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재심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공증서에 존재하는 오류와 그 이유와 취소하거나 경정할 구체적인 요구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 공증기구가 재심사신청을 수령한 경우 원래의 담당공증원 외의 공증원을 지정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재심사 결론 및 처리 의견은 공증기구의 책임자가 심사, 승인하여야 한다.

[제63조] 공증기구가 재심사를 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제기한 공증서의 오류나 기타 이유에 대하여 조사, 확인하고 아래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1) 공증서의 내용이 합법, 정확하고 처리 절차에 오류가 없으면 공증서의 처리결정을 유지한다.

(2) 공증서의 내용이 합법, 정확하나 공증 표현이나 양식이 부당하면 공증서를 회수하고 경정 후 당사자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공증서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정공증서를 교부한다.

(3) 공증서의 기본내용이 위법하거나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증서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4) 공증서의 부분적 내용이 위법하거나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보정공증서를 교부할 수 있고 위법하거나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의 증명내용을 취소할 수 있다. 또 공증서를 회수하여 위법하거나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취소·경정 후 당

사자에게 새로 교부할 수 있다.

(5) 공증서의 내용이 합법, 정확하나 처리 과정에서 절차 규정을 위반하고 필요한 절차가 누락된 경우 탈루된 절차와 과정을 보정하여야 한다. 보정이 불가능하거나 공증 절차의 위반이 중한 경우에는 공증서를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된 공증서는 회수하여야 하고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증서는 소급하여 실효된다. 공증기구가 공증서를 취소한 경우 지방공증협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4조] 공증기구는 재심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처리 결정을 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공증서의 취소 또는 경정, 보정처리가 필요로 하는 경우 재심사처리 결정 후 10일 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재심사처리 결정 및 처리 후의 공증서는 원래의 공증기록과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공증기구가 재심사함에 있어 불가항력, 보충 증빙자료나 관련 사항의 확인의 필요로 인하여 소요된 시간은 전단에서 정한 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보충 증빙자료나 관련 사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최장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65조] 공증기구가 교부한 공증서의 내용 및 처리절차가 이 규칙 제63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이 규칙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6조] 공증서가 취소된 경우 아래의 규정에 따라 공증비용을 처리한다.

(1) 공증기구의 귀책사유로 공증서를 취소

하는 경우 수령한 공증비용은 전부를 당사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2)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공증서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령한 공증비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3) 공증기구와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증서가 취소된 경우에는 수령한 공증비용을 일부 환급한다.

[제67조] 당사자, 공증사항의 이해관계인이 공증기구가 한 취소 또는 불취소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공증협회에 제소할 수 있다. 제소시의 처리방법은 중국 공증협회가 정한다.

[제68조] 당사자, 공증사항의 이해관계인이 공증서에 포함된 당사자간 또는 당사자와 공증사항의 이해관계인간의 실체 권리의 의무의 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공증기구는 이 분쟁을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소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69조] 공증기구 및 공증원이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사자, 공증사항의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공증기구가 이에 상응하는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공증기구는 배상 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공증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당사자, 공증사항의 이해관계인과 공증기구간에 과실책임과 배상액수로 인한 분쟁이 있는 경우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지방공증협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70조] 관련 공증규칙이 공증사항별 공증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다.

[제71조] 공증기구가 공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 등록, 보관 등 사무를 수리한 경우 관련 전문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전문규정이 없는 경우 이 규칙의 처리를 참조한다.

[제72조] 공증기구 및 공증원이 공증업무처리 중 공증법 제41조, 제42조 및 이 규칙이 규정한 행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법행정기관은 공증법, 공증기구업무관리방법, 공증원 업무관리방법에 의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한다. 공증행정규범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공증협회가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한다.

[제73조] 이 규칙은 사법부가 해석한다.

[제74조] 이 규칙은 2006. 7. 1.부터 시행한다. 사법부가 2002. 6. 18.에 공포한 공증절차규칙(사법부령 제72조)는 동시에 폐지한다.

제11장 부칙